

제 호

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

사업장명:

소재지:

전화번호:

아래 작업은 산업재해 또는 작업 중 질병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므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합니다.

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작업중지 해제 결정 없이 작업을 재개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8조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작업중지 범위	☐ 전면 ☐ 부분(구체적으로 기재)
작업중지 사유	☐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☐ 기타(구체적 사유 기재)

지방고용노동청(지청)장 직인

근로감독관

(인)

※ 표지에 발부번호가 없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, 이 표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허가 없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.

안내사항

- 이 명령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있어 긴급히 시행하는 처분으로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.
-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제2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